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5-2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누5044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
피고, 항소인	○○○○시 ○○○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구합55832 판결
변 론 종 결	2022. 12. 21.
판 결 선 고	2023. 2. 1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1. 1. 6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9,674,510원, 농어촌특별세 11,405,320원, 지방교육세 9,124,25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5-26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(그 별지 '관계 법령' 부분은 포함하되 '3. 결론' 부분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[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,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(을 제4 내지 6호증)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]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 주장 요지

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, 적어도 이 사건 신탁보수 5,702,661,310원 중 '건축과 관련된 신탁보수 2,061,462,799원(신탁 지연이자 포함)'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나 감리, 신축 공사대금 지급 등에 소요된 비용이 들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5-26

을 제4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이 사건 신탁보수가 '기본보수'와 '성과보수'로 구성되어 있고, 그 구체적 산정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'별지 4'의 신탁보수 산출기준에 의하도록 정한 사실(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), ② '별지 4'의 신탁보수 산출기준에 의하면, '기본보수'는 '(예정 건설비 + 분양예정 총액) × 약 1.87%'의 방식으로 산정되는데, 이때 '예정 건설비'는 예상 사업수지 분석표상 도급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의 합계액(부가가치세 제외)으로 하고, '분양예정 총액'은 실제 분양액에 불구하고 예상 사업수지 분석표상 분양예정 총액(부가가치세 제외)으로 정한 사실, ③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서(을 제5호증)에 첨부된 '예상 사업수지 분석표'의 '2안(목표)' 란 기재에 의하면, '분양수입' 195,016,552원, '공사비' 106,808,528,000원, '설계비' 1,900,000,000원, '감리비' 1,700,000,000원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.

이때 피고는,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는 '건축 관련 업무'와 '분양 관련 업무'로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보수 역시 '건축 관련 신탁보수'와 '분양 관련 신탁보수'로 나누어 산출된다는 전제하에,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'별지 4'의 신탁보수 산출기준에 의해 계산한 총 신탁보수 5,711,448,996원[1] 중 '건설 관련 신탁보수'는 2,064,639,473원[2]이므로, 이를 원고가 실제로 약정한 이 사건 신탁보수 5,700,000,000원에 안분하여 계산하여 보면, 이 사건 신탁보수 5,700,000,000원 중 '건설 관련 신탁보수'는 2,061,462,799원(신탁 지연이자 962,040원 포함)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[3]

그런데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'신탁재산에 대한 조세·공과금 및 등기비용, 설계·감리비용

1) [{예정 건설비(공사비 106,808,528,000원 + 설계비 1,900,000,000원 + 감리비 1,700,000,000원) + 분양예정 총액 195,016,552,000원} × 0.0187 = 2,064,639,473원(소수점 이하 버림) + 3,646,809,522원(소수점 이하 버림)]
2) 예정 건설비(공사비 106,808,528,000원 + 설계비 1,900,000,000원 + 감리비 1,700,000,000원) × 0.0187(소수점 이하 버림)
3) 피고의 2022. 10. 28. 자 변론재개신청서 참조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5-26

및 공사대금, 차입금·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,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 및 그 이자, 신탁부동산의 수선·보존·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' 등에 소요되는 비용(신탁사무처리비용)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고,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조합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미리 이 사건 조합에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는 사실(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8조), ② 위 '신탁사무처리비용'과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'신탁보수'는 '기본보수'와 '성과보수'로 되어 있고, 그 구체적 산정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'별지 4'의 신탁보수 산출기준에 의하도록 정한 사실(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)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신탁보수 중 '건축 관련 신탁보수'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나 감리, 신축 공사대금 지급 등에 소요된 비용은 '신탁사무처리비용'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보수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나 감리, 신축 공사대금 지급 등에 소요된 비용이 들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5-26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